

“노사협력 밀알되어 극복되는 경제위기”

국 무 조 정 실

우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 전화 (02)738-6897 / 전송 (02)732-9132
자치행정심의관실 과장 김경년 사무관 이태인

문서번호 국무총괄15200-29

시행일자 2000. 1. 20.

경 유

받 음 받는곳 참조

참 조

| | | | |
|------|-----|--------------|---------|
| 보존기간 | | 국무조정실장 | 국 무 총 리 |
| 공개여부 | | | |
| 조정관 | 김경년 | 2000. 1. 20. | 이태준 |
| 심의관 | 이명수 | | |
| 과 장 | 김경년 | | |
| 기안자 | 이태인 | | 협조 |
| 심사자 | | 심 사 일 | |

제목 공명선거 실현에 관한 지시(국무총리지시 2000-4 호)

1. 오는 4.13(목) 실시하게 되는 제16대 국회의원선거는 새천년을 맞아 최초 실시하는 전국적인 선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 이번 선거를 통해 「2000년을 공명선거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다음 사항을 지시하니 당해기관은 물론 산하기관·단체에 이를 신속히 전파시켜 이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선심행정 등의 자제 및 조치

-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신분상 또는 직무상 지휘감독권이 미치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금지
-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본래의 사업시기 조정, 예산의 변경 지양
- 선거관여의 오해 소지가 있는 지방출장, 선심행정 행위 자제
- 선거관여 공무원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그 책임 추궁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단체 등의 선거중립 견지

- 선거상황실 등에서 불법선거운동 감시·단속, 선거구민의 동향 파악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선거에 중립이 요구되는 국민운동단체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통·리·반장 등의 선거관여 시비 차단과 지도·단속 강화

다. 선거사범의 엄정한 조치

- 선거질서를 해치고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치
- 특히 금품살포, 비방·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조직의 설립·이용, 각종 단체의 불법선거 등 주요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의법 처리

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원

- 선거사무 추진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장비·시설 등의 협조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 지원

※ 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사항을 참고

붙임 공명선거 실현에 관한 협조요청사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 1부. 끝.

받는곳 가01~09, 11~21, 31~47, 56, 58

< 제 2 안 >

받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목 선거법 위반 단속인력 등 운용에 관한 협조요청

1. 항상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오는 4.13에 실시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정부는 이 선거를 깨끗하고 돈 안드는 선거가 되도록 하여 새로운 세기를 맞는 우리의 정치문화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3. 정부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귀 위원회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오니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 가. 현재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선거법이 개정되는 경우 선거일이 머지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귀 위원회에서 정부기관 등의 공무원을 파견받거나 자원봉사인력 등으로 불법선거운동 단속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그 단속인력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한 선거법 교육을 통해 적법하고도 불편부당한 단속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 무 총 리

공명선거실현에 관한 협조요청 사항

첫째,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선심행정 등의 자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명선거의 요체는 선거법준수에 있으며 공직자의 선거중립 자세 견지는 공명선거실현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선거법에는 모든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역대선거를 돌아보면 국무위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지방순시를 통한 특정지역 개발 약속, 선거운동현장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선거지역 방문,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우호적인 언행,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주민접촉·회의 개최·교육실시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시비가 제기된 적이 적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도 최근 선심행정, 고위공직자의 선거개입 시비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에 대하여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선거의 본래 기능인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선거부정의 논란이 되어 온 공무원의 선거관여 시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불식시켜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사업 추진등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상적 직무수행이라 하더라도 선거관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직자의 지방출장, 선심행정 기타 선거를 의식한 언행은 신중을 기하도록 하시어 공무원의 선거개입 시비를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명선거실현 및 공무원의 선거중립 확보대책을 마련하시어 이를 모든 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키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시비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주시고 선거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지원단체 등의 선거중립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의 수임기관으로서 이들 기관이 공명선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순수하게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활동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그 소속정당의 지원을 받아 선거에서 당선된 현실을 감안할 때 이들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거상황실을 설치·운영하게 하거나 선거부정감시 등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개하게 하는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있어서도 특정정당·후보자의 득표에 유리 또는 불리한 활동을 할 소지가 없지 않으며 특정정당과 관련이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명선거추진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투·개표사무 등 선거사무 지원은 조직편제에 따른 상설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주시고 별도의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법선거 운동 감시·단속, 선거구민의 동향파악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거에 있어 중립이 요구되는 국민운동단체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각종단체와 통·리·반장 등에 대해서도 일체 선거관여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엄정한 지도·단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선거사범의 엄정한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 조차 돈 쓰는 선거풍토와 비방·흑색선전 등 후진적 선거행태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선진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적 여망인 공명선거 풍토정착도 요원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법이 지켜지고 돈이 적게드는 깨끗한 선거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권자와 함께하는 공명선거”를 선거관리 목표로 정하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제보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위법현장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하여는 중지조치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단속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금품수수나 유권자 매수 등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례들은 수사권이 없는 우리위원회로서는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선거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선거질서를 해치고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각종 선거사범에 대하여 신속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특히 금품·음식물·선심관광제공, 비방·허위사실유포, 공무원의 선거관여, 사조직의 설립·이용, 각종단체의 불법선거운동 등 공명선거를 현저히 해치는 주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다스려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풍토가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거사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선거사무는 그 특성상 법정절차에 의하여 단기간내에 완전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되어야 하는 바, 선거사무추진과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인력·장비·시설 등에 관한 협조나 지원 요구가 있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직원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선거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중 적정인원을 지원받아 단속활동에 참여시켜 왔으나 공무원의 감축 등으로 지원인력의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이거나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등에는 공정성을 훼손할 소지마저 없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속인력을 국가공무원 등으로 충원하고자 하오니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교육부·농림부·정보통신부·환경부·노동부·국가보훈처·조달청·국세청·관세청·병무청·산림청 등)의 산하기관 소속공무원과 정부산하 공공단체의 직원을 단속인력으로 지원해 주도록 요청할 경우 당해 기관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